

조선-이탈리아 수호통상조약(1884)의 체결 및 비준

조선의 유럽 공사 파견의 계기로서

안중찰* (베네치아대학교)

이 논문은 1884년 6월(이하 양력)에 체결된 조선과 이탈리아왕국 간의 조약의 내용과 의미를 다룬다. 1876년 조일수호조규 체결 이후, 청의 이홍장의 권고와 조선 정부의 자체적 수교의 노력이 맞물려서 조선 정부는 적극적으로 미국과 유럽과 조약체계에 편입되려고 했다. 1882년 5월 22일에 체결된 조미수호통상조약(비준은 이듬해 5월 19일)과 직후에 체결된 조영, 조독수호통상조약이 그러한 예들이었다. 그러나 1882년 7월의 임오군란과 뒤이은 청의 내정간섭과 일본의 배상 요구 등으로 조선 정부가 수세에 몰렸는데 이를 배경으로 이듬해 조영, 조독조약도 관세를 낮추어서 결국 개정·비준되었다. 이후 조선 정부는 러시아, 이탈리아, 프랑스와 조약을 체결을 통해 서구와 통상교섭 상황을 지속했다. 1884년 7월에 체결된 조러통상조약(비준은 1885년 7월)은 청과 영국 등의 이 조약에 대한 관심과 1886년 6월 4일에 체결된 조불수호통상조약(비준은 1886년 5월 12일)은 “종교의 자유”라는 관점에서 연구가 되었다. 그런 점에서 1884년 6월에 체결된 조선-이탈리아 조약(비준은 1886년 7월 24일)은 학계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조선과 이탈리아 조약은 조선 정부로서는 일본, 청, 그리고 영국, 독일 등과 불리하게 체결된 조약을 일부 수정하기 위한 지점들이 있었다. 영사재판권에서 조미조약과 비슷한 내용, 조선의 법률 수준이 미국의 법령과 재판절차와 일치한다고 인정될 때는 치외법권을 철폐한다는 내용이 있다. 다만 통상조약에서의 관세를 조미수호통상 수준으로 높이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다. 조미조약의 수출 관세는 일반물품

*베네치아대학교 동양학부 부교수 (jongchol.an@unive.it)

증가(ad valorem) 10에서 30프로였고 수출세는 5프로였다. 그러나 조영조약에서 수입 관세는 대체로 5-20프로로 낮추어졌고 수출세는 5프로였다. 이후 조선-이탈리아 조약과 조선-러시아 조약, 조불조약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이는 이탈리아가 통상에 우선권을 두었기 때문에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지점이다. 한편 조선-이탈리아조약의 비준서가 교환된 1886년 7월 이후, 특히 조선 정부는 당시까지 조약 비준이 완료된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러시아 등 유럽 5개국,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 각각 전권공사를 파견하려고 했다. 그러나 유럽 지역은 대한제국 수립 이전에는 실패했다. 1901년에 이탈리아 공사가 부임하고 이듬해 초, 이탈리아공관이 서울에 설치되었던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것은 조선 정부의 중립화 외교와도 관련이 있었다. 조선과 이탈리아의 조약은 19세기 말 20세기 초 크게 불균형적인 관계에 있지 않았던 두 국가의 경험 속에서 새롭게 검토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 **주제어:** 조이통상수호조약, 비준, 치외법권, 관세, 공사 파견, 중립화

I. 머리말

조선 정부는 “강화도조약”(1876) 이후, 국제법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면서, 유럽 국가들과 수교에 나서게 되면서 전통적인 조공외교와 다른 “국제법”을 습득하면서 수호통상조약을 미국(1882), 영국(1883), 독일(1883)과 각각 체결하고 뒤 이어, 이탈리아(1884), 러시아(1884), 프랑스(1886)와도 조약을 체결했다. 이 글은 이런 흐름 속에 있었던 조선과 이탈리아 간에 맺어진 조이수호통상조약(朝伊修好通商條約)을 다룬다.¹ 조이수호통상조약은 1884년 6월 26일 맺어졌고(1886년 7월 24일 비준) 1905년 11월 17일 일본의 대한제국에 대한 보호조약이 체결될 때까지 이어졌고, 1956년에 다시 수교가 이루어졌다(최덕수 외, 2010, 239-240).²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이 조약은 대체로 2년 전에 체결된 조미수호통상조약과 비슷하다고 단정하고 있고, 이 조약에 대해 사실상 유일하게 언급하고 있는 연구서 정도가 조약 체결과 비준을 설명하면서 “조약 체결 자체에만 관심 있었던 이탈리아”라고 소제목과 설명을 붙였다 (최덕수 외 2010, 239-240). 따라

1 이탈리아는 당시에 이태리(伊太利) 혹은 의대리(義大利, 意大利)등으로 표기되었지만, 여기서는 일률적으로 이탈리아로 표기한다.

2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이 글에서는 양력으로 날짜를 표기했다. 양력과 음력의 계산은 다음을 참고, 한국천문연구원, 천문연구지식정보사이트(<https://astro.kasi.re.kr/life/pageView/8>). 다만 자료에 있는 날짜는 원래대로(1896년 이전은 음력) 두었다.

서 이 조약에 대한 학계의 평가는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고, 이후 전개된 조선-이탈리아 관계에 대해서도 외교관 카를로 로제티(Carlo Rosetti)에 대한 연구를 제외하면 거의 없다(임동현 2019). 최근의 조약 관련해서 출간된 중요한 연구에서도 이탈리아-조선 간의 조약은 전혀 언급되지 않는다(유바다 2023, 한성민 2023).

당시 조선 내 정국의 추이는 매우 복잡한 변화를 겪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 대외관계사에서 조이수호통상조약과 직후의 조선 정부의 움직임은 주목할 지점들이 있다는 것을 이 글에서 주장하려고 한다. 당시의 고종 정부에 대한 평가는 학자들의 의견이 극명하게 나뉘어지고 있기에(교수신문기획 2005), 이 글은 그 점을 정면으로 다루기보다, 조선 정부의 외교사라는 관점에만 초점을 맞추려고 한다. 이 글이 다루려는 점을 몇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882년 5월 조미수호조약이 체결된 직후에 바로 터진 임오군란(동년 7월)으로 청의 조선에 대한 직접 간섭이 시작되면서 동시에 조선은 청과 일본과 불리한 통상조약을 맺게 되었다. 조미수호통상조약의 체결과 비슷한 시기에 고종을 중심으로 조선 정부는 청과의 전통적인 사대관계를 외교공관과 상주사절제도로 바꾸자고 제안을 했다. 물론 이는 청의 반대로 좌절되었고 오히려 조선은 철저한 속방화 정책의 대상이 되었다. (김수암 2000, 159-163쪽; 유바다 2017, 150-163; 안종철 2016). 또한 조미조약체결 시기 바로 직후에 맺었던 영국과 독일과의 조약도 이듬해 재협상을 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무역조건에서 몇 가지 조선에 불리한 지점을 얻게 되어서 조미조약에서 얻은 성취의 의미는 퇴색되었다. 그런 점에서 임오군란 이후 조선 정부는 1880년대 초부터 추진해 나가던 외교정책을 지속하면서, 새로운 흐름을 모색하고 있었는데 그 흐름에 조이수호통상조약이 있었다. 이는 뒤에 살펴듯이 조러조약(1884), 조불조약(1886)과 연계된 일련의 흐름 속에서 조선 정부는 이들 유럽 국가들과의 조약 체결에 적극적이었다.

둘째, 조약의 내용상, 치외법권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조선 정부가 사법개혁을 통해서 다시 치외법권의 수정 가능성을 명시했다는 점에서, 재협 후 비

준된 조영, 조독조약에 비해서 1882년 맺었던 조미수호조약의 흐름을 이어가는 지점이 있었다. 그런 점에서 1880년대 청의 압박 속에서도 1880년대 초 조선 정부의 개혁 의지를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이 점은 조선 정부가 조이조약 이후 오스트리아-헝가리(1892), 벨기에(1901), 덴마크(1902)와 맺은 조약에도 그대로 남아있다.³ 왜 조이조약에서 선언적일지라도 왜 그런 조항을 넣었는지 살펴해보았다.

셋째, 이후 조선 정부와 이탈리아의 둘 다 내부 사정으로 상대 국가에 공사 파견과 공관 설치가 늦어지게 되었다. 조선의 경우, 이탈리아 내에 공관 설치하는 보호국화가 된 1905년까지도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러시아, 프랑스와 조약 비준 직후, 특히 이탈리아와의 조약 비준(1886) 이후 조선 정부는 유럽공사를 파견하려고 했다. 그리하여 1887년부터 1901년까지 줄기차게 유럽 5개/ (오스트리아-헝가리제국 포함) 6개국 검임공사를 파견하려고 했고 실제 러시아(1896), 영국-이탈리아(1901), 독일-오스트리아(1901), 프랑스(1901)에 전권공사를 파견했다. 그리고 이탈리아의 조선공사파견과 공관 설치는 1901년-02년에 이루어졌다.

이탈리아는 1880년대부터 전통적으로 독일이나 오스트리아제국과 동맹을 맺기는 했지만 영국, 프랑스와도 우호적인 관계에 있었다. 1차 대전의 경우에도 영국-프랑스-미국 측으로 동맹측을 바꿀 만큼 유럽의 전통적인 동맹체제에 긴박되지 않았고, 해외식민지 쟁탈전에 뛰어난 강력한 제국주의 국가가 아니었다(Gilmore 2012, 263-269). 그런 점에서 조선 정부의 입장에서 대외관계상 이탈리아의 상징적 의미가 강했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조약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조미조약 이후, 청, 일본, 영국, 독일 등과의 조약에서 관세나 영사재판문제에서의 불리한 조항 등으로 타격을 입은 조선 정부가 주어진 현실을 타개하

3 이 점은 기존 연구에서도 간략하게 언급되었다. “이후 러시아와 프랑스는 영국과 독일의 선례를 따라서 선후속약에 조건부영사재판권 폐지규정을 명문화했다. 반면에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조약에는 3관 11조에 이 내용을 추가했다.” (최덕수 외 2010, 248). 다만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와 조약 체결은 조이조약 체결 한참 이후의 일이다. 선후속약은 비공식적인 기록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조이조약에서 이 점을 조약안에 명문화한 것은 상징적인 것이었지만 일정한 성과로 볼 수 있다.

기 위해 추진한 러시아, 프랑스와의 일련의 조약 체결이라는 관점 속에서 조이 조약의 의미를 보고자 한다.

II. 조선과 이탈리아 조약 체결(1884)의 배경

1. 조선과 이탈리아의 상호인식

조선은 1876년 일본과 새로운 조약을 맺은 후, 초기에는 조공체제와 서구 국제법 체제가 양립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안종철 2016) 결국 구미국가와 수교를 하는 것이 당시 조공체제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라는 것을 자각했기에 1882년 5월에 조미수호조약 체결에 임했다. 이에는 청 북양대신 이홍장의 권고, 새로운 서책의 수입, 국왕의 결단 등이 있었다. 직후에 영국과 독일과도 조약 체결에 응했다. 그러나 같은 해 7월에 있었던 임오군란과 대원군의 정치 복귀를 통한 정치적 변동이 있었고, 청이 대원군을 텐진으로 데려가고 조선 정부에 종주권을 강화했다. 그 결과가 조청상민수륙통상장정(1883)이었고, 이에 독일과 영국도 조약의 재협상을 요구해서 수정된 조약은 저율관세에 더해, 영사재판권 회수 가능성을 적시하지 않았다.

이러한 불리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조선 정부는 통리기무아문을 중심으로 사대외교를 넘어서는 외교를 모색하면서, 동시에 박문국을 통해 1883년 “한성순보·주보”를 발행했다. 이 매체를 통해서 계속 구미에 대한 지식을 수입했다. 그 일환으로 이듬해 1884년 12월의 갑신정변시까지, 조선 정부는 유럽국가들과 수교를 모색했는데 이에 관련된 국가들이 바로 러시아, 이탈리아, 프랑스였다. 특히 러시아의 남하정책에 깊은 관심을 기울리고 있던 영국과 청, 그리고 일본은 조러수호통상조약만 아니라 직후 추진된 조러육로통상조약에 대해서 신경을 곤두세웠다. 그런 점에서 이탈리아와의 조약 체결은 조러조약에 비해서 관심이 적었다.

당시 조선은 이탈리아에 대한 존재를 고대 로마제국의 연속성에서 이해했다. 즉 중국 후한서에서 로마는 “대진국(大秦國)”으로 언급되고 있었기에, 한반도에서도 로마제국의 존재는 어렵듯이 알고 있었다(Hoppál 2019). 또한 한성순보를 통해서 조선 정부는 이탈리아 통일 (1860-71, Risorgimento) 이후의 이탈리아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조이통상조약 체결 직전에 이탈리아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 다음은 그 일단이다.

영국 수도의 시사신보(時事新報)에 의하면, 지금으로부터 25년 전에 이 나라(이탈리아)에는 각종 인민들이 제각기 일당을 수립하여 서로 단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때 옆에서 보는 사람들은 모두 생각하기를, “이 나라 국민들이 서로 단합되어 분리되지 않는 것을 보려면 얼마나 많은 세월이 걸려야 할지 도저히 알지 못하겠다”라고 하였다. 그 뒤 이 나라 정부에서는 단합에 마음을 쏟고 거친 국민을 달래어 한 사람의 통치자의 명령에 순응케 하여 점차 개화로 나가게 하고, 각방으로 부강을 꾀하였다니 오늘날에는 드디어 모든 국가들과 어깨를 겨루며 같이 달리고 있다.....서기 1877년경에 이 나라의 세출은 항상 세입보다 많았는데 그 5년 뒤에는 세입이 꼭 세출보다 많게 되었으니 여기에서 해마다 늘어난 금액을 평균해보며 60만 파운드에 달한다...⁴

당시 이탈리아는 통일 초기의 불안을 극복하고 1880년대 초에는 재정적으로도 안정되어 가면서 국제사회에 강자로 등장하고 있었다. 통일 직후부터 이탈리아는 지중해의 북아프리카에 대한 식민지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프랑스의 튀니지 점령(1881), 영국의 이집트 보호국화(1882) 등으로 이 지역의 제국주의 경쟁에서 밀렸다. 이에 이탈리아는 그 대안으로 19세기 후반 홍해를 따라 이디오피아 인근의 에리트레아(Eritrea)를 점령하는 등, 동부 아프리카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갔다(Gilmore 2012, 263-265).

그런 배경에서 이탈리아의 동아시아 진출은 다른 유럽제국에 비해서 늦었다(Salvadori 2018, 45-53; Mavropoulos 2020, 93-109). 이탈리아는 1866년, 청과 일본

4 “이태리가 날로 성해지다,” 『한성순보』, 제16호, 1884년 3월 1일(양력 3월 27일). 번역은 관훈클럽신영연구기금, 1983년), 『한성순보 1883-1884』, 198쪽.

도쿠가와 막부와 동시에 수교를 맺었지만, 살리에르(Vittorio Sallier de la Tour)가 동경에 양국의 초대 전권공사로 자리를 잡았다. 독립된 주청 이탈리아 공사관이 설치된 것은 1878년이였다(Onelli 2013, 33-34). 심지어 이때 공사관도 북경이 아닌 경제중심지인 상하이에 설치되었는데 독립된 청공사관의 첫 영사/공사로 부임해온 사람이 페르디난도 데 루카(Ferdinando de Luca)였다. 이는 이탈리아의 입장에서 동아시아, 특히 청과의 관계는 경제적 관점이 보다 중요했음을 알 수 있다.

데 루카는 후술하겠지만, 1884년 조이수호통상조약의 전권대표로 조선에 온 인물로 그의 주청영사/공사의 활동기간은 1878~1889년간이었다(Onelli 2013, 33). 이탈리아 공사관은 결국 정치 중심지인 북경으로 1889년 옮겨가게 되었지만, 데 루카 공사는 바로 직전에 사망한다(Onelli 2013, 34). 후술하겠지만 청과 관련된 정치문제가 중요해졌기 때문에 이탈리아는 북경으로 공사관을 옮기게 되었다. 이런 배경에서 조선에 대한 외교 수립은 이탈리아 극동 외교의 마침표 같은 것이었다.

2. 조약 체결의 정치적 의미

조선에게 조이통상조약이 유럽의 강호 오스트리아-헝가리제국(합스부르크)과의 조약(1892)보다 우선했다는 점은, 합스부르크 제국이 해외보다는 유럽에서의 입지 구축에 치중했던 탓이 컸다.⁵ 당시 이탈리아는 유럽 내 제국주의 위상에서는 낮았지만, 유럽 문화의 중심지이자, 해상무역 강국으로 동아시아에서 영국이나 프랑스에 비해 덜 제국주의적으로 보여졌다.⁶ 이는 물론 이탈리아의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관심이 일차적이었고 물리력 부족으로 동아시아 지역

5 이 조약에 대해서는 고종이 오스트리아에 보낸 속방조회문을 애매하게 하거나 고종의 청제 문제 등을 통해 나름의 반청정책을 추진했다고 보는 입장(민회수 2010)과 그 의미는 제한적이었다고 평가하는 입장도 있다(최덕수 외 2010, 240).

6 조약 체결 전 이탈리아에 대한 인식은 『한성순보』를 통해서 보면 부강한 나라, 해군, 육군, 전신, 학교의 정비(1884.3.1.), 혹은 만국위생회의 소집국가로 의료강국(1884.5.5.) 등으로 매우 긍정적이었다.

진출이 늦었던 것과는 관련이 깊다.

조이수호통상조약에 대해서 이탈리아 정부가 먼저 조선 정부에 타진해왔는데, 그 결과 이탈리아 대표단이 1884년 6월 10일에 조선에 오게 되었다.⁷ 대표단의 데 루카 단장은 당시 중국 상하이에 이탈리아 공사로 있었던 인물이다. 조이조약의 흥미로운 특징으로 들 수 있는 것은 서구 국가와 체결한 조미, 1차 조영, 1차 조독조약과 달리 최초로 유럽의 전권공사가 서울에 와서 처음부터 조약을 협상·체결했다는 점이다. 이것은 이미 독일과 영국의 전권공사가 직전 해에 서울에 들어와서 조약을 재협상했던 배경도 있지만, 이미 서울에 청의 관리청, 일본공사관 등이 설립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할 수 있다. 눈여겨볼 대목은 회담을 위해 이탈리아의 전권대신이 조선 정부에 보낸 다음의 서신 내용이다.

대이탈리아 흠차대신 大義大利欽差大臣 루카(盧:Luca, Ferdinando del)의 조희(照會).

[이탈리아국왕 전하께서 보내신 서한에 따라 본 대신은 대조선 편의행사전권대신(大朝鮮便宜行事全權大臣)이 되어 양국의 영원한 화호통상장정(和好通商章程)을 상의해서 수립하되, 대국(영국·미국·독일)들과 이미 수립한 조약이나 대러시아국과 장차 수립할 조약과 더불어 일률로 상의하여 처리할 것입니다. 삼가 명을 받들어 수행 인원들을 이끌고 인천항(仁川港)까지 가서 한양으로 가고자 합니다.⁸

데 루카 공사는 조선이 미국, 영국, 독일과 맺은 조약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향후 러시아와 맺어질 조약과 보조를 맞추면서 조선과 교섭에 임했다. 이에 대해 조선 정부도 조선-이탈리아 조약 체결에 적극적으로 임했다.⁹ 외교부에 해당하는 통리군국사무아문이 적극적으로 움직였고 결국

7 “高宗 21年 5月 17日(辛卯) 駐清伊太利國特命全權公使 「루카」(Firdinand de Luca 盧嘉德)가 隨員 6人 · 兵官 15人 · 水手兵丁 230名을 거느리고 修好通商條約締結의 命을 받들고 仁川港에 도착하다.” 『고종실록』, 高宗 21年, 甲申(1884年) 5月 17日(辛卯).

8 『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日記』 2, 高宗 21年(1884年) 5월 19일.

9 조선 정부는 루카 공사에게 다음과 같이 답신했다. “귀 대신께서 왕명을 띠고 먼바다를 건너오셨는데, 벌써 본국의 지방에 도착하셨다고 하니 기쁘고 반가움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아문 협관(協辦)

1884년 6월 26일에 조약이 체결되었다.¹⁰ 조이수호통상조약의 체결 직후인 동년 7월 21일에 텐진 주재 러시아 공사 베베르가 조러조약 체결을 위해서 인천에 왔다.¹¹ 즉 조선 정부 입장에서도 상당히 주도적으로 공개적으로 이탈리아와의 조약 체결에 임했고 뒤이은 조러조약도 이 조약과 연동된 문제였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조러수호통상조약 이후 별도로 추진되었던 러시아와의 육로통상조약은 향후에 분제시되었다. 조선말에서 대한제국기에 이르는 각국과의 조약 현황은 아래의 <표 1>과 같다.

<표 1> 조선말 대한제국기 수교 현황

번호	나라	조약명/체결일(음력)	비준 혹은 비준교환일	비고
1	일본	조일수호조규/1876.2.26. (1876.2.2) ¹²	1876.03.26	통상장정은 별개
2	미국	조미수호통상조약/1882.5.22(1882.4.6)	1883.05.19	언어: 한문, 영어(동등)
3	영국	조영수호통상조약/1883.11.26(1884.10.27) ¹³	1884.04.28	재협상(한, 영) ¹⁴
4	독일	조독수호통상조약/1883.11.26(1884.10.27)	1884.11.18	재협상(언어: 한, 독, 영) ¹⁵
5	이탈리아	조이수호통상조약/1884.6.26(1884.5.4.)	1886.07.24	언어(한, 이, 영) ¹⁶
6	러시아	조러수호통상조약/1884.7.7(1884.5.15)	1885.10.14	언어: 한, 러 ¹⁷
7	프랑스	조불수호통상조약/1886.6.4(1884.5.3)	1887.05.30	언어: 한, 불 ¹⁸
8	오스트리아 · 헝가리	조오수호통상조약/1892.6.23(1892.5.29)	1893.10.06	동경에서 체결/ 언어: 한문(?) ¹⁹
9	청	대한국대청국통상조약(大韓國大清國通商條約) /1899.9.11(1899.8.7)	1899.12.14	“中韓通商條約” (중국) 언어: 한문
10	벨기에	한백(韓白)수호통상조약/1901.3.23	1901.10.17	언어: 불어, 한문 ²⁰
11	덴마크	한정(韓丁)수호통상조약/1902.7.15	1903.08.11	언어: 불어, 한문 ²¹

*출전: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구한말조약취찬』, 상중하.

김만식(金晩植)과 주사(主事) 고영철(高永喆)을 파견하여 인천에 나가 영접하게 하였으니, 귀 대신과 함께 서울로 올 것입니다. 빨리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日記』 2, 고종 21년(1884년) 5월 19일.

- 10 “又以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言啓曰,今日午時,臣等與義大利國全權大臣盧嘉德,將議定通商條約交鈐之由, 敢啓。傳曰, 知道。” · 『승정원일기』 고종 21년 윤5월 4일(양력 6월 26일)
- 11 “天津駐在「러시아」國領事「웨베르」가 修好通商條規를 議定하기 위하여 仁川에 到着하니 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協辦 金玉均 등으로 迎接케 하다.” 『고종실록』, 高宗 21年, 甲申(1884년) 5月 29日(癸卯).
- 12 1876년 조일수호조규 체결 이후 같은 해 8월 24일 서울에서 조인된 수호조규 부록에 부속된 “통상장정”에는 관세, 특히 수입세에 관한 규정이 없다. (김경태 1994, 제3장, “불평등조약 개정 교섭과 방곡문제” 참고.

위의 표에서 주목해야 하는 점은 조약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우선 조약의 비준이 매우 중요했는데 기존의 연구에서는 조약 체결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비준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기에 비준 시점 및 이후의 조선 정부의 움직임에도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III. 조약 내용과 조약 체결 이후 공사 파견 문제

1. 치외법권과 관세문제

불평등조약의 두 가지 핵심은, 저율관세체제와 영사재판을 포함한 치외법권 문제였다. 조선이 여러 국가들과 맺은 조약에서 두 가지 문제는 항상 함께 하는 문제였다.²² 저율 관세의 문제는 조선과 일본 사이에서 처음에 관세조항을 두지 않아서 상당한 격론이 생겼고, 청의 밀무역 문제 등으로 상당히 많은 격론과 갈등이 있었다. 이 문제로 조선 정부가 나중에 일본과 관세협정체결에 나서

-
- 13 영국 외교관과 민간인의 조선 내에서의 권리(치외법권)와 관세를 조항이 가장 핵심적이었다. 조독조약의 경우와 비슷했다.
- 14 각 언어들은 동일한 내용을 가지지만, 해석상의 이의는 영문을 참고해서 결정한다. 조약문 12조.
- 15 각 언어들은 동일한 내용을 가지지만 이의가 있을 시 영문 본문을 참조하여 결정한다고 했다. 조약문 제 12조.
- 16 각 언어들은 동일한 의미를 가지지만 오해가 있을 시 영어를 참고한다고 했다. 조약문 제12조.
- 17 각 언어들은 동일한 의미를 가지지만 오해가 있을 시 러시아어를 참고한다고 했다. 조약문 제12조.
- 18 각 언어들은 동일한 의미를 가지지만 오해가 있을 시 러시아어를 참고한다고 했다. 조약문 제12조.
- 19 “오국(奧國) 당국이 조선국 당국에 발송하는 모든 공식 서신은 당분간 한문을 첨부한다”로 되어있다. 조약문 제 12조.
- 20 제12조에 “양체약국은 본조약의 해석 혹은 실행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분의(紛議)에 대하여 중재를 의뢰할 것을 동의한다”가 추가되어 있다.
- 21 제 13조에 “양체약국은 본조약의 해석 혹은 실행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제 분의(紛議)에 대하여 중재를 의뢰할 것을 동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한-벨기에 조약에 있는 표현과 같다.
- 22 이외에도 조일수호조규처럼 해안선을 측정할 수 있는 권리를 편무적으로 규정한다든가 하는 것도 들 수 있다.

게 되었고 정치적 격변 때문에 1883년 7월 25일에 일본과 “해관세칙”과 “통상장정”이 체결되었고 청과도 “상민수륙통상장정”을 체결해서 저율 관세와 내지 무역을 허용했다. 이는 직전 해에 발발한 임오군란의 수습 과정에서 조선이 불리한 상황에서 체결된 것이다(김경태 1994). 그런 점에서 상대적으로 다른 조약에 비해서 관세가 약간 더 높았던 조미조약은 조선 정부로서는 큰 선물이었다.

치외법권과 관련해서 사법제도의 정비를 통해서 향후에 치외법권이나 편무적 영사재판권을 회수할 가능성을 조약에 명문화해 두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조미조약의 영사재판권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회수 가능성을 규정했다는 점은 중요하다. 영사재판권의 회수와 관련해서 조미수호통상조약 제4조에 다음 내용이 있다.

그러나 조선 국왕이 그 왕국의 법령과 재판절차를 수정 및 개혁한 결과, 그것들이 미합중국의 법령 및 재판절차와 일치된다고 미합중국이 판단할 때에는 언제든지 조선에 있는 미합중국 공민에 대한 치외법권은 철폐될 것이며 그 후에는 미합중국공민이 조선 왕국의 경내에 있을 때에는 현지당국의 법원에 복종할 것을 양제약국 간에 호상 합의 약정한다.(국회도서관 1965, 290-291)

비로 언제 미합중국이 조선 정부의 재판절차를 미국과 일치된다고 판단할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영사재판권의 수정 가능성을 미래에 설정해둔다는 것은 성과였다. 조미조약과 달리 1883년 조영, 조독조약은 낮은 저율 관세와 회수권 언급이 없는 영사재판권을 특징으로 했다. 이에 반해 조미조약의 영사재판권 규정과 비슷한 부분이 조이수호통상조약에 언급되고 있다는 점은 눈여겨 볼 지점이다.

제3조 11항. 본 조약에 의하여 부여한 재조선 이태리신민에 관한 치외법권은, 이태리 정부 측이 보기에, 조선의 법과 법적 절차가 충분히 개정·개혁되어서, 현재 조선의 관할권 하에 있는 이탈리아 신민들에게 존재하는 장애물이 제거되고, 조선의 재판관은 이탈리아 재판관과 유사한 법적 자격과 독립적 지위를 가지게 된다고 판단될 때는,

이를 철폐한다(국회도서관 1965, 446)(번역: 필자).²³

적어도 의미는 조미수호통상조약의 치외법권안과 대동소이하다. 물론 영사 재판권 개정의 판단 주체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이탈리아였지만 이러한 조항은 1882-83년간에 있었던 청, 일본, 영국, 독일과의 조약에는 없다는 점에서, 조선 정부의 조미수호통상조약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관세 문제는 조미수호통상조약 제5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5조. 그러나 우선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일용품류의 수입품에 대한 관세정률은 종가세 10프로를 초과하지 않을 것이고 사치품 예컨대 외국주, 외국연초, 시계로의 수입품에 대한 관세정률은 종가세 30프로를 초과하지 않을 것이며 그리고 수출토산품은 종가 5프로를 초과하지 않는 관세를 지불한다....(국회도서관 1965, 291)

즉 일반상품의 수입세는 10프로로 하되 사치품에 대해서는 30프로까지 부과할 수 있게 하고, 수출품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5프로를 잡았다. 그러나 조영, 조독 조약에서는 수입품에 대해서 일반상품에 대해서 5프로 혹은 대부분의 상품에 사실상 7.5프로로 낮추어졌다(국회도서관 1965, 349-350; 한승훈 2018, 217-218).

조선 정부는 이러한 영국과 독일의 조치, 나아가 청의 “조청상민수륙통상장정”에 대해서 강한 불만이 있었는데, 비록 실무진 차원에서 별문제 없이 통과되었지만 이 조약 중 관세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었다. 예를 들면 고종은 비준을 앞두고서 개정된 조영조약의 재개정 가능성을 미국 공사에게 물어보기도

23 원문: “Article III, 11, It is hereby declared that the right of extra-territorial jurisdiction over Italian subjects in Korea granted by this Treaty shall be relinquished when, in the judgment of the Italian Government, the laws and legal procedure of Korea shall have been so far modified and reformed as to remove the objections which now exist to Italian subjects being placed under Korean jurisdictions, and Korean judges shall have attained similar legal qualifications and a similar independent position to those of Italian judges.”

했다.²⁴ 또한 국왕은 청 측이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의 저율관세라든가 서울에 상점을 개설하려는 것에도 반대했다.²⁵ 한편 미국은 조미수호통상조약에서 규정된 최혜국조관에 따라서, 영국과 독일이 조선에서 누리는 저율 관세를 균점하게 되었다(한승훈 2018).

결국 이러한 청의 저율 관세(종가 5%), 영국과 독일의 저율 관세 등은 조미수호통상조약 세칙에서도 그대로 유지하게 되었다(국회도서관 1965, 469-471). 아마도 이는 조영, 조독조약에서 잡혀진 통상세칙을, 이후 수교하는 국가들은 당연히 자국에게 유리하게 규정하려고 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통상에 주안점을 두었던 이탈리아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었다. 이 점은 조선과 프랑스 사이의 국교 수립을 위해 조선에 왔던 프랑스 측 대표의 인식에도 그대로 나타났다.

1882년 체결한 조약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한 영국과 독일 정부는 그다음 해 신임 전권위원들 즉 베이징 주재 영국 공사 해리 파크스 경과 일본 주재 독일 총영사 잡페 씨를 파견했습니다. 동일한 조약들이 1883년 11월 26일 체결되었습니다. 1884년 중국주재 이탈리아 공사 루카 씨 또한 서울에 와서 조약을 체결했는데, 베르뭇주와 제노바산 국수처럼 순전히 이탈리아 제품에 부여된 몇몇 특혜만 제외하면 선례와 다르지 않습니다.²⁶

1883년 11월 26일에 조인된 조영, 조독조약이 이듬해 각각 4월 28일, 11월 18일에 비준되었다. 한편 영국이 조선과 조약을 비준하자마자 제국주의 활동

24 국왕이 조약개정의 가능성을 물었는데 당시 그는 조미수호통상조약을 염두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At a private audience as the Palace yesterday, His Majesty, after informing me that H.B.M’s Representative Sir Harry Parkes had arrived at the open port of Jemshuan [Incheon]; asked if I thought it would be possible to modify the Treaty lately concluded with Great Britain before the exchange of ratification.” (Lucius H. Foote to Secretary of State, April 26, 1884)(McCune 1951, 73).

25 “고종, 이홍장에게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 4조의 양화진과 한성에 상점을 개설하는 조항을 개정할 것을 요청함,” 『舊韓國外交文書』 8, 淸案 1, 고종 27년 2월 2일, 문서번호 1120.

26 “프랑스 전권대신 꼬고르당, 조선을 둘러싼 청국 및 열강의 관계에 대하여 본국에 보고함(Cogordan→De Freycinet),” 고종 23년(1886년, 淸 德宗 光緒 12年, 日本 明治 19年) 4월 17일(양력 5월 11일). 원문은 『프랑스외무부문서』 1권(1854-1899), 【33】“현재까지의 조선의 정치 상황 보고”에 실려있다. (http://db.history.go.kr/id/sk_015r_0010_0020_0020_0010).

에서 경쟁 상대였던 프랑스는 조선과의 조약 체결에 적극적이었다. <표1>에서 보았듯이, 이탈리아는 러시아, 프랑스보다 시기에 조선 정부와 수교를 맺었지만 비준은 이들 국가보다 늦은 1886년 7월 24일에 이루어졌다. 즉 유럽 주요 5개국(영, 독, 프, 러시아, 이탈리아) 중 가장 늦게 비준을 했다. 한편 이탈리아와의 조약비준 이후, 조선 정부는 청, 일, 미국과 유럽 등 조약 체결 국가에 공사(급)을 파견하는 것을 결정했다.

2. 조약 체결 이후 청의 종주권 주장과 공사파견

1884년 조이수호통상조약과 조러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된 이듬해인 1885년 2월, 조선 정부는 러시아 공사가 조약의 비준서를 가지고 오기를 기다렸다. 다음은 그 일단을 보여준다.

상이 이르기를, “러시아는 언제 나온다고 하던가?”하니, 서상우가 아뢰기를, “미처 알아 보지 못하였습니다만, [일본에 있는] 이탈리아 공사에게 들으니 3월 말쯤 약조 때문에 나올 것 같다고 합니다. [한편] 프랑스가 약조를 한다면 중국과 싸우든 화해하든 결말을 낸 뒤에 나온다고 합니다.”²⁷

서상우(徐相雨, 1831-1903)는 갑신정변 직후 예조참판으로 임명되었고 통리고 섭사무아문에도 깊이 관여한 관료로, 조이수호통상조약의 비준교환에 참여하게 되었다.²⁸ 위 기사는 국왕 고종이 갑신정변 처리를 위해서 일본에 건너갔다가 돌아온 사절단 중 서상우(홍차대신)와 웰렌도르프(부대신)를 만난 자리에서 나눈 대화이다. 조약 비준을 위해서 러시아공사가 아직 조선에 오지 않는 것을 아쉬워하면서, 국왕은 프랑스와의 조약 체결을 위한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고

27 원문은 다음과 같다. “上曰, 俄羅斯何時出來乎? 相雨曰, 未及知之矣。聞義大利公使, 三月晦間, 以約條事, 似當出來, 而法國立約, 則與中國, 戰和間結末後出來云矣。”『승정원일기』 2933책 (탈초본 135책) 고종 22년(1885년) 2월 20일.

28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서상우”(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27851)

일본에서 서상우는 이탈리아 공사를 만났음을 보여준다. 또한 조선 정부는 프랑스와의 조약 체결을 시도하고 있었는데, 당시 프랑스는 중국과 베트남문제를 두고 전쟁중이어서 조선과의 조약은 전쟁 이후에 진행되게 되었다. 즉 조선 정부는 당시 이탈리아, 러시아, 프랑스 등 유럽의 강국들과 조약 체결을 서두르고 있었다.²⁹

그런데 조이조약의 비준이 늦어진 이유로 추정할 수 있는 이유는 두 가지 정도를 들 수 있다. 첫째는 데 루카가 조선 외부에 조약비준을 늦출 것을 요청하는 서신에서 언급한 것처럼 로마 상원이 조약문에 대한 독자검토를 진행하기에 다른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린다는 것이었다.³⁰ 또한 베트남을 둘러싼 청-프 전쟁으로 상하이에서 남중국해 지역을 돌아서 로마까지 다녀야 하는 현실적 문제도 있었다. 둘째는, 당시 1884년 8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당시 청과 프랑스가 베트남에 대한 종주권 문제를 두고 전쟁에 돌입하면서 중국 남부 해안에 대한 불안정에 더해, 이탈리아는 청국 내부에 있었던 가톨릭 신부들(프랑스인을 포함)에 대한 국적부여 여부를 검토하고 있었기에 청 측과 긴장 관계에 있었다(Onelli 2013, 34). 그러기에 이탈리아 외교부가 조약 비준에 관심을 기울이기 어려웠을 수도 있다.

조선 정부가 1885-86년 무렵에 조약 체결 및 비준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었던 이유는 1884년 갑신정변 이후 더욱 강화된 청의 종주권 주장과 관련이 있다(국사편찬위원회 1999; 森万佑子 2017). 갑신정변 직후 청과 일본은 텐진조약(1885)을 통해서 최소한의 군대를 남겨둔 채로 양국의 군대를 한반도에서 철수했지만 청은 전통적인 종주권 주장을 강화했다. 예를 들면 1885년 10월 3일에 대원군을 돌려보내면서, 이홍장은 원세개를 주차조선총리교섭통상사의(駐劄朝鮮總理交涉通商事宜)라는 직함과 막강한 권한을 부여해서 조선에 보냈다(국사편찬

29 유럽 강대국에 대한 조약 체결을 통해서 일본과 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우선적이었다고 할 수 있지만 세 나라와의 조약 체결이 유기적으로 연관되었다는 의미는 아니다. 예를 들면 러시아와는 육로를 통한 조약 체결에 의미를 부여하고, 프랑스와는 종교 문제 등과 관련된 현안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30 『舊韓國外交文書』 21, 義案 1, 고종 22년 5월 14일(양력 1885.6.26), “조의조약비준기한연기요청의 건,” 문서번호 14, 6쪽.

위원회 1999, 20). 당시 서울에 있던 미공사관 측에서는 청이 조선을 “외교와 내치에서 자유롭게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볼만큼 외교가에서도 청의 종주권 문제는 중요한 문제였다(McCune 1951, 135).³¹ 원세개 과건을 통해서 미국인 고문, 오웬 데니(Owen N. Denny)를 정부 전체에 대한 고문이 아닌 행정관청인 외부의 고문으로 격하시키려는 의도에 대해, 국왕 고종과 미공사관은 비판하면서 그를 외부협판만이 아니라 국왕과 협의가 가능한 내부의 고문으로 임명했다(McCune 1951, 140).³²

청 정부는 원세개를 통해서 이러한 국왕 고종의 정책에 대해서 강력히 반발하면서 퇴위 모의를 하기도 했다. 특히 당시 조선 정부가 조러조약의 비준 이후 새로이 육로통상조약을 체결하려고 했는데 이것을 조러밀약으로 둔갑시켜서 조선이 러시아에 보호국화를 요청했다는 것으로 고종을 압박했다. 이에 대해 오웬 데니는 직접 텐진의 이홍장에게 강력히 항의를 하기도 했고 원세개의 경질을 요구하기도 했다.³³

영국은 거듭된 조선 정부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두 해 전에 해밀턴항(거문도)을 점거했는데 그때 이후로 줄곧 조선을 쓸어버리고 그 영토를 청이 합병할 것을 사주해 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어떤 구실이 없이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기 있는 청의 대표원세개는 그런 구실을 제공하기 위해 일해왔습니다. 그는 국왕이 러시아의 보호를 청하는, 날인된 편지를 썼다고 비난하면서 증거를 내놓았는데 [이는] 매우 조악한 위조문서였을 뿐입니다.³⁴

31 원문은 다음과 같다. “This remark [원세개의 발언] was extraordinary to me in that it was the first positive utterance of a Chinese official I have heard to the effect that China would not permit Korea to be free in her foreign and internal affairs.” [강조: 필재 in George C. Foulk to Secretary of State, No. 240, (Oct. 15, 1885).

32 “His Majesty [국왕 고종] was now considering the framing of a fresh request to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to have it select for him an advisor for his government!-and my opinion on this subject was asked by his Majesty.” in George C. Foulk to Secretary of State, No. 255, (November 25, 1885).

33 데니의 이홍장에게 보낸 항의 편지는 Denny to Li Chung Tang, (June 29, 1886)(Swartout Jr. 1984, 37-38).

34 “England two year ago took possession of Port Hamilton against the repeated protests of Corea, and since then has been urging China to wipe out the government of Chosen and annex its territory to

또한 청은 조선의 외부를 통해, 조선의 대외관계를 장악하려고 했고, 전 미국 공사 포크가 조선 정부의 자문관이 되고자 했을 무렵, **조선** 국왕의 권위를 이용해서 그를 본국에 돌려보내려고 했다(Palmer 1963, 13).³⁵

한편 조선-이탈리아 수호통상조약은 비준이 늦어져서 2년이 약간 지난 1886년 7월 24일에야 이루어졌다.³⁶ 이들 러시아, 프랑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탈리아와 등과 조약 체결 및 비준이 이루어지자 말자 조선 정부는 청 정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미국과 유럽에 공사를 파견하려 했다는 것은 이들 유럽국가들과 수교와 공사파견은 긴밀히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³⁷ 거기에 더해 조선의 내정 개혁과 외국에 공사 파견도 긴밀하게 연결된 사항이었다. 오웬 데니는 이홍장과 교섭을 하면서 친구에게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미래를 위해서 저는 문제 해결의 기초로서 다음의 조건들 중 하나를 제시했습니다. 첫째, 모든 조약국들은 조선 정부의 독립(integrity)을 보장해야 한다, 둘째, 조선 정부에 대해 관심이 깊은 세 개의 나라들(이 경우 중국, 러시아, 일본은 그런 확약을 해야 한다, 셋째, 청과 러시아가 그렇게 한다. 이홍장 전하는 마지막 제안에 특히 기뻐했고

that of China. Of course she could not do this without some excuse, and the Chinese Representative [원세개] here set to work to furnish such an excuse. He accused the King with writing a letter over the great seal inviting Russian protection, and undertook to furnish proofs and in doing so showed up a most bungling piece of forgery.” letter 20, Owen N. Denny to Mr. Frazer (Nov. 14, 1886), (Swartout Jr. 1984, 43). 프레이저(Everett Frazer)는 뉴욕의 사업가로 조선 정부의 (명예)총영사로 1880-90년대 있었고 미국과 조선 정부에 그를 고문으로 추천했다(Swartout Jr. 1984, 171).

35 “The foreign office [외부] is absolutely under Chinese control in so much that the Royal pleasure does not seem to be consulted concerning any of the affairs of state of great importance and I am inclined to believe that at some time they act against his desire. The president in a dispatch to me discloses it to be the will of the King that Lieut. Fouk should leave Korea, while I have reliable assurance that his wish is quite the reverse.” in Hugh A. Dinsmore to Secretary of State, No. 20 (May 27, 1887).

36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 이탈리아공사 크라비오사와 갑신년에 협정한 약조를 교환하겠다고 보고함,” 『승정원일기』 2949책 (탈초본 135책) 고종 23년(1886년) 6월 23일. 원문은 다음과 같다. “又以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言啓曰, 今日未時, 臣等與義國公使管樂所, 將甲申年所訂約條, 互換之意, 敢啓. 傳曰, 知道.”

37 박정양은 당시 조신희와 함께 내무부 협관으로 있었는데 이 둘은 고종의 측근들이었다. 인물정보는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을 참조하고 일일이 밝히지 않는다. 박정양은 1887년 9월 24일에 고종을 알현했다. (박정양 2014, 31-32).

직접 페테르그부르크와 이 문제를 두고 전신으로 연락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내게 조선국왕에게 확약해줄 것을 부탁하면서, 그의 왕위는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이는 앞으로의 협약들이 저의 제안들에 기초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만약 이게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개혁으로 나아갈 수 있을 건데, [이건]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이는 산업 발전을 위한 기백들이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에는 우리는 이탈리아와 조약 비준을 주고 받았습니다. 우리는 특히 러시아와 육로에 관련된 중요한 조약을 맺고 있는데 범죄인 인도조약에 대한 것도 곧 다를 것입니다 (Swartout Jr, 1983, 44-45).[강조: 필자]³⁸

당시 조선 정부에게는 조선 내정의 개혁과 외교 문제는 연결된 문제였다.

한편 미국에 박정양을 파견하면서 동시에 조선 정부는 영국, 독일, 러시아, 이탈리아, 프랑스 등 5개국 전권공사로 조신희(趙臣熙)를 파견하기로 결정했다.³⁹ 조선 정부는 실무책임자인 참찬관(參贊官)에 임명된 이용선(李容善)이 신병을 이유로 갈 수 없어서 대신 이용태(李容泰)를 5개국 참찬관에 대신 임명했다.⁴⁰ 고종은 참찬관 이용태를 출국 전 직접 만났다.⁴¹ 그는 5개국에 부임하기 위해 홍콩을 거쳐가게 되었고 약 2년 후 돌아온 후 고종에게 보고했다.

“화륜선이 하루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구주(歐洲) 각국으로 가려면 이태리를 먼저 거쳐야 하는가?” 하니, 이용태가 아뢰기를, “화륜선은 속도가 각각 다릅니다. 어떤 것은 천 리도 못 가지만 대부분은 1400여 리를 갑니다. 그리고 구라파 각국을 가려면 먼저 이태리 땅을 경유해야 합니다.”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태리는 옛날에 대진국(大秦國)이라 불렀는데, 수천 년간을 거쳐 오는 사이에 지금은 그 의관과 복식이 가장 오래된 옛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가?”하니, 이용태가 아뢰기를, “이태리

38 Letter 20, Owen N. Denny to Mr. Frazer (Nov. 14, 1886).

39 『고종실록』 고종 24년(1887) 9월 28일 자. “二十八日。召見駐筭英、德、俄、義、法全權大臣趙臣熙、參贊官李容善。辭陞也。”

40 『고종실록』 고종 24년(1887) 10월 22일 자. “又教曰：‘直閣李容泰，駐筭英·德·俄·義·法五國參贊官差下，’

41 “丁亥十二月二十一日申時，上御萬慶殿。參贊官入侍時，右副承旨金炳秀，假注書權博淵，記注官玉秉觀，別兼春秋韓光洙，駐筭英德俄義法參贊官李容泰，以次進伏訖。上曰，史官分左右。上曰，參贊官進前。容泰進前。以下缺。” 『승정원일기』, 고종 24년(1887) 12월 21일 계묘 19/20 기사 1887년 光緒(淸/德宗) 13년.

가 한서(漢書)에서 말한 대진국입니다. 신은 붓으로 그린 그림 속에서 소매가 길고 폭이 넓으며, 관(冠)의 장식이 보통과 다른 것을 종종 보았는데, 이것이 구라와 사람들의 옛날 복식이라고 하였습니다. 후에 전쟁이 끊이지 않은 탓에 군복을 개조하여 편한 복식을 만들었는데, 오늘날에도 그대로 통용하여 늘상 착용한다고 합니다.”하였다....⁴²

비록 조신희는 유럽에 가지 못했지만 이용태의 유럽 방문은 실제 잠시 이루어진 듯하다.⁴³ 그는 이탈리아가 한서에 나오는 대진국이라는 정보를 전해주면서 이탈리아가 1869년 개통된 수에즈운하를 통해서 유럽에서 가장 먼저 닿는 곳이었음도 언급하고 있다.

한편 조약 체결 후 이탈리아 정부는 조선을 방문하는 이탈리아인들에 대한 영사 업무를 영국영사관에 위임했다.⁴⁴ 당시까지 조약체결국 중 유럽 국가 중 이탈리아만 공관 설치가 늦어져서 결국 1901년에 이루어졌다. 이탈리아는 1880년대 초반에는 여전히 아프리카에 대한 관심이 우선이었고, 청불전쟁(1884-84)을 거치면서 중국에 대한 정치적 관심사가 높아져서 공사관을 상하이에서 북경으로 옮겨왔다. 그러한 와중에 조선에 전권대사를 보내서 조약을 체결했지만 공사관 설치의 여유는 없었다.

청의 조선에 대한 압박을 배경으로 조약을 체결한 이탈리아 정부가 1차적으로 관심을 가진 사항은 조선이 과연 중국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인 국가인지 여부였다. 주워싱턴 이탈리아 공사는 본국에 보고하기를, 박정양 주미공사가 워싱턴에 와서, 청공사관과 별개로 움직이고, 미 국무부에 청과 다른 입장에서 본인들을 소개했고, 항상 독자적으로 미 정부와 교섭을 했기에 조선은 청의 속국이 아니라고 보았다.⁴⁵ 이에 기초해서 이탈리아 외교부도 조선이 청으로부터

42 “上曰，輪船日行幾何，而距歐洲各國，當先由意大利云耶？容泰曰，輪船遲速各異，或不及千里，多至千四百餘里，而距歐洲各國，可以先由意境矣。上曰，意國，是古稱大秦國云，則歷傳千年之間，今其衣冠服飾，或是最古舊制耶？容泰曰，意國云是漢書所謂大秦國也。臣往往見墨影畫像中長袖廣幅，冠飾殊常，此謂歐人古時之服，後因戰爭不息，改軍服以儻儻之制，仍為今日通用常着云矣。上曰，史官就座。仍命退，諸臣以次退出。” 『승정원일기』 고종 26년(1889) 2월 1일.

43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를 요한다.

44 『각사등록-근대편』, 「總關公文」 3, 1889년 6월 29일자(음력)

독립적이었다고 결론을 내렸다.⁴⁶ 그것이 갖는 함의는 당연히 조선 정부가 이탈리아와 독자적인 외교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한편 이후에도 <표 2>에서 언급하듯이 조선 정부는 1899년까지 계속해서 유럽 5개국(영, 프, 독, 이, 러), 혹은 6개국(5개국+오스트리아)에 특명전권공사를 보내려고 했지만 청의 속방화 정책과 청일전쟁, 을미사변 등으로 실현되기 어려웠다. 예를 들면 신병을 이유로 홍콩에 머물렀던 조신희를 대신해서 1890년 2월 초에도 박제순을 다시 5개국 전권공사를 임명했지만 역시 성공하지 못했다.⁴⁷ 청일전쟁 이후, 대한제국 수립과 더불어 다시 민영익을 6개국 전권공사를 임명했지만 부임하지 못했다.⁴⁸ 조선 정부에게 1901년 이전, 유럽공관 설치의 선언적인 의미에 그쳤다.

〈표 2〉 각 조약체결국과 공사관 설치 유무

번호	나라	조약명/비준일	조선내 공사부임 및 공사관설치**	해당국내 공사부임 및 공사관설치**
1	일본	조일수호조규/1876.3.26	주일공사 파견/ 1886.8.23(통보)	공사/1880. 12. 17
2	미국	조미수호통상조약/1883.5.19	주미공사 파견 /1887.11.12(임명) ⁴⁹	공사/1883.5.19
3	영국	조영수호통상조약/1884.4.28	주영공사 파견*** /1901 ⁵⁰	주청공사(영사파견) /1884.4.28

45 주위싱턴 (이탈리아) 공사가 외교부에 보내는 서신(IL R. Ministro in Washington al Ministro degli affari esteri, 1888. 4.13), Affrari Politici 1888-1891 Serie A Busta 24, Corea 1888 (이탈리아 외교사료관).

46 외무차관이 유럽내 공사관에 보낸 서신(Il sotto-segretario di Stato per gli affari esteri ai RR. Rappresentanti in Berlino, Londra e Pietroburgo, 1888.5.5.), Affrari Politici 1888-1891 Serie A Busta 24, Corea 1888 (이탈리아 외교사료관).

“앞선 통신과 내부 규정에 따라서 저는 우리 위싱턴공사가 보내온 보고서를 보냅니다. 여기서는 미국 내 조선의 외교사절단은 중국공사관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적 태도(un contegno affatto indipendente)를 취하고 있다고 적혀있습니다.”(“Facendo seguito alle precedenti comunicazioni sullo stesso argomento e per opportuna di Lei norma, Le trasmetto copia di un rapporto del regio ministro a Washington, da cui rilevasi che la missione diplomatica della Corea agli Stati Uniti ha assunto un contegno affatto indipendente dalla legazione cinese (1)”) (번역: 필자)

47 “고종, 신병이 있는 유럽 주재 전권대신 조신희를 대신하여 협판내무부사 박제순을 파견하라는 전교를 내림,” 『승정원일기』 고종 27년 1월 12일(양력 2월 1일).

48 “고종, 특명전권공사 민영익에게 영국 등 유럽 6개국에 주재를 명함,” 『승정원일기』 고종 34년 8월 5일,

4	독일	조독수호통상조약/1884.11.18	주독공사 파견*** /1901.3.20	공사/1884.8.14
5	러시아	조러수호통상조약/1885.10.14	주러공사 파견*** /1899.3.20 ⁵¹	공사/1885.10.14
6	이탈리아	조이수호통상조약/1886.7.24	주영공사가 겸임*** /1901.3.20	공사/1901.12.16.(이전 은 주한영국영사관) ⁵²
7	프랑스	조불수호통상조약/1887.5.30	주불공사 파견*** /1899.3.20	공사/1888.6.12
8	오스트리아 · 헝가리	조오수호통상조약/1893.10.6	주독공사가 겸임*** /1899.3.20 ⁵³	공사부임 안함 /독일공사관이 대리
9	청	대한국·대청국통상조약 (大韓國大清國通商條約)/1899.12.14	주청공사 파견/ 1902.9.22이전 ⁵⁴	공사/1899.12.14 ⁵⁵
10	벨기에	한백(韓白)수호통상조약 /1901.10.17 ⁵⁶	프랑스공사 겸임	공사/1891.10.17
11	덴마크	한청(韓丁)수호통상조약/1903.8.11	주덴마크공사 파견 못함	공사부임못함/ 주러공사가 대리

*출전: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공사파견은 공사관 설치를 전제; ***1887년 5개국, 혹은 1892년 이후 6개국 유럽공사파견을 시도했으나 실제 1899년 이후 가능.

조선 정부가 일본에 공사관과견(1886.8.23)을 통보한 것은 공교롭게도 이탈리아

- 49 주미공사 파견에 대해서는 우여곡절 끝에 이루어졌다는 것은 잘 알려져있다(박정양 2014).
- 50 1901년에는 구체적으로 영국 및 이탈리아 공사에 민영돈, 프랑스에 조민회, 독일 및 오스트리아 공사에 민철훈을 임명해서 주재토록 했다. “고종, 박정양을 미국에, 민영돈을 영국과 이탈리아에, 조민회를 프랑스와 독일에, 민철훈을 오스트리아에 주재시키도록 명함,” 『고종실록』 光武 5년 3월 12일
- 51 1899년 3월 20일에 대한제국은 러시아, 프랑스, 오스트리아 공사로 이범진을 임명했다. 『舊韓國外交文書』 19, 『法案』 1, 光武 3년 3월 20일, 문서번호 1036.
- 52 1891년 6월 5일에 주청 이탈리아공사(Cavalieri)가 잠시 조선에 오기도 했다.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 이탈리아 공사가 부임함,” 『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日記』 28, 고종 28년(1891) 4월 29일. 그러나 공사관 설립전과 을사조약 이후에는 영국공관에 이탈리아의 이해를 맡겼다. 1880년대부터 1910년대까지는 영국과 이탈리아는 사실상 동맹관계였다. “英公使「조·단」이 外部로 照會하여,” 『舊韓國外交文書』 第21卷 義案 97號 光武 5年 12月 16日.
- 53 이 조약의 의미는 청의 속방화정책에서의 탈피로 볼 수 있다(민회수 2005).
- 54 청의 경우에 1899년에 되어서야 새로운 조약하에서 국제관계가 “주권평등”의 원칙하에서 이루어졌는데 북경이 공사관 부지는 1902년이 되어서야 마련된 듯하다. 그러나 천진에서는 이미 1883년 6월 10일 경부터 천진에 공관의 공사가 시작되었다. “청총판조선상무 진수당, 천진 공관 건축 가격의 지불을 요 청함(陳樹棠→민영목), 『舊韓國外交文書』 8, 淸案 1, 고종 21년 1월 22일, 문서번호 52. 박제순의 주청 전권공사 임명은 1901년 가을이지만, 북경에서 일하기 시작한 것은 1902년 가을인 것으로 보인다. 外部(朝鮮) 編, “外部訓令附報告”(奎17999, Vol.1-3). (<https://kyudb.snu.ac.kr/pf01/renderer/fmg.do>).
- 55 청의 경우에 1882년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 체결 이후 파견된 상무위원의 거주공관을, 1899년 조약 체결 후 그대로 공사관으로 사용했다.
- 56 Carbonnet 2023, 27-54.

리아와의 조약문 비준서를 교환한 후 약 1달이 지났을 때이다.⁵⁷ 또한 청의 텐진의 주진대원에서 주진독리(공사)로 바뀌게 된 것은, 바로 직전인 1886년 2월 21일 자였다.⁵⁸ 즉 유럽 5개국과의 조약이 체결된 것이 확정될 즈음 적극적으로 아시아 주변국과 유럽 공사관 설치에 나섰다.

결국 조선 정부는 유럽 6개국에 더해 벨기에와 덴마크와는 러일전쟁 직전인 1901년, 1903년에 각각 수교를 맺었다. 이탈리아의 대한제국 공사관이 1901년에 설치되게 되었고,⁵⁹ 이어서 벨기에도 서울에 공사관을 설치했다. 결국 조선 정부만 아니라 유럽의 수교 국가들이 1901년이 되어서야 서울에 공사를 파견하고 공사관을 설치하게 된 것은 대한제국의 대외독립을 인정함을 의미했다.

이에 더해, 청의 의화단 사건을 통해서 조선의 상대적 가치를 인정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공교롭게도 의화단폭동 당시, 당사자인 청을 제외한 일본, 미국, 영, 독, 불, 러, 오, 이 등 1900년 이전에 조선과 수교한 주요 8개국(연합국을 구성, 의화단에 공동으로 대처했고 조선 정부도 이 문제를 예의주시했다(차경애 2005).

대한제국은 1899년 청과 조약을 맺으면서 청의 종주권 주장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동시에 유럽과의 외교관계를 적극적으로 도모했다. 그리하여 1901년에 유럽 몇 개국에 전권공사를 파견하고, 공사관을 설치했다. 영국(1901), 프랑스(1901), 러시아(1901), 독일(1901)에 각각 공사관이 설치되었다. 오스트리아·헝가리제국의 대한제국 공사관은 독일공사가 겸임했다. 이탈리아의 경우는 영국의 대한제국 공사가 겸임하게 했다. 러일전쟁이 발발하지 않았다면 대한제국 정부는 주이탈리아 공사, 주오스트리아 공사관을 설치했을 가능성이 높다. 한

57 『舊韓國外交文書』 1, 日案 1, 고종 23년(1886) 7월 24일, 문서번호 718

58 이에 대한 최근의 자세한 연구는 그 의미가 주진대원은 전통적 사대외교의 관리에 가까웠지만, 주진독리는 조선 정부의 입장에서 공사파견이었다(森万佑子 2017, 51-61). 사대와 교린의 착종의 현장 관리로서의 주진독리의 공사로의 활동은 모리 마유키 2020, 225-264. 청의 조선의 “외교”활동에 대한 압력과 의지 관철에 대해서는 유바다 2017, 290-306.

59 결국 서울의 이탈리아 외교공관이 설치된 이후에 자국민에 대한 영사업무 등을 영국에서 가져왔다. 1901년 이후 이탈리아 공사관의 활동에 대해서는 다른 장에서 논하고자 한다.

편 이탈리아와 벨기에는 1901년과 이듬해 대한제국에 공사를 파견했지만, 오스트리아·헝가리제국과 덴마크는 조선내 공사관의 역할을 일본에 있는 자국 공사가 겸직토록 했다.

IV. 맺음말

이 글에서는 1884년 조미수호조약과 그 전후에 나타난 몇 가지 특징을 다루었다. 첫째, 이 조약은 1882년 조미조약 이후 이듬해 있었던 조영, 조독 수호통상조약 이후 처음으로 유럽 국가와 체결한 조약이다. 그런 점에서 조영, 조독 조약에서 문제 되었던 부분을 조선 정부에서는 최소한 조미조약 수준으로 올리자고 한 것이다. 본문에서 언급했지만, 이 조약은 갑신정변 후 강화된 청의 종주권 주장에 저항한다는 의미에서 조리, 조불조약 체결과 더불어 조선 정부로서는 큰 의미가 있었다.

둘째, 조선 정부는 청의 압박이 강화되는 속에서도 1882년 5월에 맺어진 조미수호통상조약 수준의 조약 체결을 강력히 희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조영, 조독 조약에서 언급되지 않았지만, 조미조약에서 언급되었던 영사재판권에 대한 회복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은 중요하다. 이후 오스트리아-헝가리, 벨기에, 덴마크 등과의 조약에서 그런 회복 가능성이 조약문 안에 언급되었다. 그러나 관세 문제에서 종가(ad valorem) 5-10프로의 저율 관세가 언급되어 있기에 다른 열강들의 입장이 반영되었다.

셋째, 조선 정부에서는 이탈리아가 특별히 강력한 동맹체제에 긴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이후에 이탈리아가 조선의 “중립화”의 성공을 위해 움직여 줄 것을 기대했다. 이것은 1901년 조선 정부의 영국-이탈리아 전권공사 파견, 그리고 이탈리아 정부의 조선 내 공사관 설립으로 나타났다. 이탈리아는 해상국으로서, 조선에 공사관 설치를 통해서 동아시아에서 교두보를 확보했다.

이탈리아의 동아시아 진출이 늦어짐으로써 조선에 대한 이탈리아의 관심은 크게 성장하지 못했다. 게다가 공사관 설치가 된 1902년 초부터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일본의 조선에 대한 보호국화, 병합 등을 통해서(와다 하루키 2019, 이태진 2009), 조선에 대한 이탈리아의 관심은 미약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의 “중립화” 문제라는 관점에서 이탈리아 공사관의 역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⁶⁰ 이탈리아 외교부의 조선과의 외교 자료에 대한 자료발굴은 더 요구되는데 특히 공사관 설치 이후의 한국과 이탈리아 관계에 대해서 더욱 그러하다.

그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조선과 이탈리아의 수교 140주년에 양국의 초기의 국가적 만남에 대한 이러한 몇 가지 특징들을 볼 때 최소한 양국 사이가 한 쪽으로 일방적으로 기울어져 있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과거에 이탈리아가 동아시아로 진출할 때 중국, 일본에 이어 극동의 마지막 지역이 대한제국이었다. 조선의 입장에서는 동아시아 강국 사이에서 유럽 세력을 끌어들여서 “중립”을 취하고자 했다. 긴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정학적 위치상, 한국과 이탈리아는 21세기에도 중견국으로서 유럽과 아시아에서만 아니라, 전 지구적 문제에서 협력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러한 가능성은 과거의 무게를 철저히 재는 것에서 시작해야 할 것이다.

60 대한제국 황제가 이탈리아 국왕에게 보낸 친서는 러시아와 일본의 전쟁이 발발하면 대한제국의 중립을 도와달라고 했다. 국왕 고종이 이탈리아국왕에게 보낸 편지(1903년 11월 23일), Serie Politici P, 1901-1916, Corea 1888 (이탈리아 외교사료관).

참고문헌

<1차 문헌>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s://db.history.go.kr/>)

천문연구지식정보 사이트 (<https://astro.kasi.re.kr/life/pageView/8>)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

『고종시대사』 1-6권(1967-1972), 『고종실록』

『구한말조약회찬』 (1876-1945) 중. 1965. 국회도서관 입법조사국.

『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日記』 1883-1895 (奎17836-v.1-44),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 연구원
(<https://kyudb.snu.ac.kr/pf01/rendererimg.do>)

『구한국외교문서: 의·비·서·해·하·서안(義·比·瑞·鮭·荷·西案)』 21권, 1965-73.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이탈리아 외교사료관(Diplomatico Archivio in Rome), Affari Politici 1888-1891 Serie A Busta: Corea
1888.

McCune, George M. and John A. Harrison eds, with Introduction, 1951. *Korean-American relations: Documents Pertaining to the Far Eastern Diplomacy of the United States*. Vol. I, *The Initial Period, 1883-1886*. Berkley and LA,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almer, Spencer J. ed, with Introduction, 1963. *Korean-American relations: Documents Pertaining to the Far Eastern Diplomacy of the United States*. Vol. II, *The Period of Grwoing Influence 1887-1895*. Berkley and LA,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Swartout, Jr., Robert R. ed and Introduction, 1984. *An American Advisor in Late Yi Korea: The Letters of Owen Nickerson Denny*. Alabama, the University of Almalabama Press, 1984.

<2차 문헌>

국사편찬위원회, 1999. (신편) 『한국사』 39.

김경태, 1994. 『한국근대경제사연구』, 창작과 비평사.

김수안, 2000. “韓國의 近代外交制度 研究: 外交官署와 常駐使節을 중심으로.” 서울대학박사학위 논문.

교수신문기획 엮음. 2005. 『고종황제역사청문회』, 푸른역사.

국사편찬위원회 편. 1999. (신편) 『한국사』 39, 경기: 과천.

모리 마유코(森万佑子), 2020. 5. “駐津督理通商事務의 활동을 통해서 본 事大와 交隣의 교착 - 舊韓國政府 外交文書綴 第三冊~第五冊의 分析 -,” 『韓國史學報』 제79호: 225-264.

민희수, 2009. “조선-오스트리아 수호통상조약(朝澳修好通商條約) 체결의 정치적 의의,” 『奎章閣』 35:

151-184.

- 박정양(한철호 역), 2014. 『미행일기(美行日記)』, 푸른역사.
- 안중철, 2016 봄. “19세기 후반 ‘국제법’의 성격과 조일수호조규(1876),” 『역사비평』 114: 113-136.
- 와다 하루키(이웅현 역), 2019. 『러일전쟁-기원과 개전』1, 2(한길사)(원본은 岩波書店, 2009, 2010)
- 유바다, 2017.2. “19세기 후반 조선의 국제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 유바다, 2023.9. “휘튼의 『민국공법』과 오펜하임의 『국제법』에 나타난 국가, 주권, 그리고 반주권국가,” 『아세아연구』66/3: 33-59.
- 이태진, 2009. 『한국병합과 현대-역사적·국제법적 재검토』, 태학사.
- 임동현, 2019.1. “20세기 초 유럽의 눈에 비친 한국-카를로 로세티의 한국관을 중심으로,” 『역사문화연구』 72: 127-164.
- 차경애, 2005. “의화단운동진압전쟁으로 인한 한국의 국제적 환경의 변화와 대응,” 『명청사연구』, 23: 289-328.
- 최덕수, 김소영, 성숙경, 한승훈, 김지형, 2010. 『조약으로 본 한국 근대사』, 파주: 경기, 열책들.
- 한성민, 2023.9. “조선의 조약체제 편입과 조약 관련 전문용어의 인식 및 발전,” 『아세아연구』 66/3: 61-92.
- 한승훈, 2018.3. “「조미수호통상조약(1882)」 체결 당시 미국의 ‘공평함’이 갖는 함의-조선의 관세자주권 확보 시도와 좌절을 중심으로,” 『전북사학』 52: 195-226.
- 森万佑子, 2017. 『朝鮮外交の近代-宗属関係から大韓帝国へ』, 名古屋大学出版会.
- Carbonnet, Adrien, 2023. “The Belgium-Korea Treaty of Amity, Commerce, and Navigation of 1901” in Jong-Chol An and Arian Perrid eds., *Cultural Exchanges Between Korea and the West: Artifacts and Intangible Heritage*. Venice: Edizioni Ca’ Foscari.
- Gilmore, David, 2012. *The Pursuit of Italy: A History of a Land, Its Regions and Their Peoples*. London: Penguin Groups.
- Hoppál, Krisztina, 2019. “Chinese Historical Records and Sino-Roman Relations: A Critical Approach to Understand Problems on the Chinese Reception of the Roman Empire.” *Res Antiquitatis* 1: 63-81.
- Mavropouos, Nikolaos, 2020. “Why the Italians Set Their Sights on East Africa: Developments and Unfulfilled Aspirations in the Mediterranean during the 19th Century,” *Povijesni prilozi* 58: 93-109.
- Onelli, Febderica, 2013. “Inventario delle Rappresentanze diplomatiche e consolari d’Italia a Pechino (1870-1952),” in Segreteria Generale Unità di Analisi, Programmazione e Documentazione Storico-Diplomatica, *Storia & Diplomazia Rassegna dell’Archivio Storico del Ministero degli Affari Esteri*. Anno I - N, 2, Dicembre 2013 (이탈리아 외교사료관 저널).
- Salvadori, Massimo L, 2018. *Storia d’Italia: Il cammino tormentato di una nazione, 1861-2016*. Torino: Giulio Einaudi editore.

Abstract

Process and Meanings of Korean-Italian Treaty (1884)

As a Chance to Disptach Korean Envoys to Europe

An, Jong-chol

This paper discusses the contents and meaning of the treaty between Chosŏn and the Kingdom of Italy (“Treaty of Friendship and Commerce between Italy and Corea” hereafter “Korean-Italian Treaty”), which was concluded in June 1884 (ratified on July 24, 1886). After the signing of the Chosŏn-Japanese Treaty of Amity and Agreement in 1876, the recommendations of Lee Hung-chang of the Qing Dynasty and the Chosŏn’s own efforts to establish diplomatic relations coincided with Chosŏn actively trying to be incorporated into the treaty system with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The Korean-American Treaty (May 22, 1882, ratified on May 19, 1883) and Korean-British and Korean-German Treaty right after are well known. However, there were some set back of this policy due to the Military Rebellion in July 1882, the Qing’s subsequent intervention, and Japan’s demands for compensation of their damages. In particular, the import tariff of 10-30% of the ad valorem price imposed in the Korea-U.S.Treaty was lowered to 5-20% in the Korean-British and Korean German Treaty. While the Korean-Russian Treaty (1884) and Korean French Treaty (1886) are all well studied, the Korean-Italian Treaty signed in June 1884 is little known.

From the Chosŏn government’s perspective, the Korean-Italian Treaty had points in which it sought to revise treaties, concluded unfavorably with Japan, Qing, Britain, and Germany, at least following the Korean-American Treaty. First of all, although there was consular jurisdiction similar to the Korea-U.S. Treaty, there is a provision for the abolition of extraterritoriality when it is recognized that the level of law in Korea is consistent with the laws and trial procedures of the United States. However, it was not successful in raising the tariffs under the trade treaty to the level of the Korea-U.S. Treaty. The export tariff under the Korea-U.S. Treaty was 10% ad varorem for general goods to 30% for luxury goods, and the export tax was 5%. However,

under the Korean-Italian treaty, import tariffs were generally lowered to the 5-20% and export taxes were 5%. It was expected that Italy has focal point in trade with East Asia, not political issues. This means that, in terms of trade, at least it was not successful to bring back the level of Korean-American Treaty. Meanwhile, after July 1886, when the instruments of ratification of the Korean-Italian Treaty were exchanged, the Chosŏn government in particular attempted to dispatch plenipotentiaries to the five European countries that had completed ratification of the treaty up to that time, including Britain, Germany, France, Italy, and Russia in 1887. Italian Legation was installed in Seoul only in 1902. At that time the Empire of Korea showed interest in neutralization of Korean peninsular or wartime neutrality. In that respect, there are some interesting points to consider between two countries back then in the late 19th and early 20th century.

Keywords – Treaty of Friendship and Commerce between Italy and Korea, ratification, extraterritoriality, Custom tariff, Minister, Neutrality

(투고일: 2024년 02월 13일, 심사일: 2024년 03월 05일, 게재확정일: 2024년 03월 10일)